

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

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0년 8월 24일 부천시장
나. 회부일자 : 2010년 8월 24일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- 제16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2010. 9. 2) 상정
 - 제16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2010. 9. 2) 원안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감사실장 권 희 춘)

□ 제안이유

- 시민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을 명확히 하고, 옴부즈만 추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침해의 구제,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 시민옴부즈만의 역할을 증대하는 한편,
- 시정 현안사항, 주요 정책사항, 시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참여를 통하여 시민권익을 보호하고자 설치하는 시민소통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고충민원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(안 제2조)
나. 시민옴부즈만의 정수(3명 → 1명)에 관한 사항 개정(안 제3조)
다. 옴부즈만추천위원회의 설치 ·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4조)
라.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민옴부즈만의 직무와
권한 추가 규정(안 제7조제1항)

- 마. 행정심판, 재판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등 시민옴부즈만의 권한으로 보지 않는 사항 추가 규정(안 제7조제2항)
- 바. 시민옴부즈만이 직무 및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 (시 및 소속행정기관,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, 시의 사무 위탁기관) 규정(안 제8조)
- 사. 시민옴부즈만 해촉 사유 추가 규정(안 제9조)
- 아. 옴부즈만에 관한 사무기구 소속에 관한 사항(안 제21조)
- 자.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 및 예산 지원 규정 (안 제22조)
- 차. 시민소통위원회의 목적 등 규정(안 제24조)
- 카. 시민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규정(안 제25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그동안 7차에 거쳐 시민옴부즈만 운영 조례가 개정되었는데, 타 시도에 옴부즈만 조례상에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한 시군이 있는지?	○ 민선 5기 당선자 중심으로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, 현재는 소통위원회에 대한 조례 제정 시군은 없음
○ 시민옴부즈만과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시군은 13개로 파악되고 있음, 시민옴부즈만의 하는 일은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데 맞습니까?	○ 맞습니다.
○ 소통위원회 자체가 조례대상으로 판단되는데, 옴부즈만 운영 조례에 포함된 배경?	○ 고충 받는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보다 더 빠르게 추진하기 위함으로, 각 이슈별, 사안별로 그때그때, 필요할 때 구성하고 완료되면 해체하는 기능으로서 옴부즈만 기능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, 동 조례에 포함함
○ 시민옴부즈만은 시민의 고충처리가 주 목적인데 반해 시민소통위원회 설치사항은	○ 시장의 자문기구가 아니고 이슈화된 현안 사항으로 인해서 고충을 받는 이해관계인,

<p>시장의 주요정책 자문기구가 아닌지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천시에 47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새로 구성되는 시민소통위원회의 역할은? ○ 시의원의 역할과 옴부즈만의 역할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역할이 있는데 또다시 시민 소통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역할의 중복성이나 기능으로 볼때 오히려 비 효율적인 행정이 초래된다고 보는데? ○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에 경기도의회의원 1명을 포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며, 안건명이 부천시 옴부즈만 운영 조례로 안건명과도 맞지 않다고 보는데? ○ 조례안 제11조 겹직등의 금지와 관련하여 현 옴부즈만이 정당과 관련이 있는지? ○ 옴부즈만이 부시장 직속에서 어느 소속으로 되는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은? ○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? 	<p>피해를 보는 사람, 덕을 보는 사람 찬반 양쪽의 이해관계인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통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민원을 보다 빨리,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있으며, 그 목적이 이뤄지면 그 소통위원회는 해체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충 받는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함. ○ 위원회별 각기 고유 기능이 있으며, 특히 의회 기능하고 중첩되지 않도록 수시로 협의하고 소통하겠음. 또한, 지적하신 내용들은 조례시행규칙을 통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. ○ 부천 출신 경기도의원으로 시정과 관련하여 1명 포함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음. 시정과 도정은 항상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협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도정을 잘 아시는 부천시 출신 도의원들도 같이 큰 틀에서 훌륭한 옴부즈만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왔음. ○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. ○ 옴부즈만팀이 부시장 직속에서 2001년도에 행자부(현 행안부)에서 부서장은 5급으로 하여야 최소 과단위 기구로 가능하나 6급 팀장 체제로 운영되어 지적이 있었으며, 6급으로는 기구를 설치할 수 없기에 보좌기관으로 둘 수가 없어 감사실내 팀으로 설치되고 직원 복무관리는 감사실장이 하며, 옴부즈만은 독립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. ○ 시정 현안사항, 주요정책, 주민의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해를 증진하기 위함.
---	---

4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

- 시민소통위원회 설치는 부천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47개 각종 위원회 기능과 중복되고, 수정하여야 할 사항도 많다고 사료되어, 심도 있는 재논의가 필요함.
- 소통위원회 자체가 별도의 조례제정 대상으로 판단되는데, 옴부즈만 운영 조례에 포함시킨 것은 시민보다는 옴부즈만의 권한만 강화시키는 결과임.
-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민소통위원회를 분리하여 별도 조례 제정 요망(조례의 성질과 기능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)
- 소통위원회는 소통과에서 옴부즈만은 감사실에서 분리 운영되어야 할 것임.
- 시민의 대표자인 시의원 역할 및 대의기관인 부천시의회 기능 저하가 우려됨.

나. 찬성토론

- 시민소통위원회는 행정기관 중심의 일방적 행정을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으로 전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에서 이슈화된 현안사항으로 인하여 고충을 받는 이해관계인들을 공론화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코자 하는데 참 목적이 있으며, 목적이 이뤄지면 해체되는 기능으로 규정되어 있어 찬성함.
- 소통이라고 하는 목적과 취지, 상당히 공감하고 앞으로 행정이 행정기관의 일방 독주행정이 아니라 시민들과 항상 소통하고 논의하는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딛는다는 것에 크게 의미를 갖으며,
- 운영 과정상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보안사항, 조문 등에 대한 문제들도 있지만 일단 조례를 가결하여 시행과정 속에서 만약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된다면 언제든지 의원발의로도 수정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수정할 수 있으며,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행이 우선이고 과정 속에서 문제점들은 계속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 찬성함.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및 시민소통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의 입장에서 위법·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,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시정에 반영되는 참여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민원인”이란 부천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·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2. “민원”이란 민원인이 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.

3. “고충민원”이란 민원사항 중 시와 소속기관,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·단체·기관의 위법·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(사실 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.

제2장 시민옴부즈만

제3조(시민옴부즈만의 설치 등) ① 시민옴부즈만(이하 “옴부즈만”이라 한다)의 정수는 1명으로 한다.

② 옴부즈만은 『지방공무원법』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지방행정과 법률에 관하여 뛰어난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위촉한다.

③ 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을 기하고 전문적·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
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「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4조(옴부즈만추천위원회 설치·운영) ① 옴부즈만의 추천을 위하여 옴부즈만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

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하며,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.

1. 부시장 및 인사업무담당국장

2. 경기도의회 의원 1명

3. 부천시의회 의원 2명

4. 부천시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1명

5. 변호사, 대학교수, 사회단체 대표 각 1명

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옴부즈만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.

④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「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(직무의 독립성)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, 시는 옴부즈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하여야 한다.

제6조(임기 및 보수)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② 옴부즈만은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.

제7조(직무 및 권한) ①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.

1. 시민이 시와 소속기관,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·단체·기관이 행한 행위로 민원을 제출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처리
 2. 스스로의 발의에 따른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 중재·조정
 3. 시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
 4.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
 5. 권고, 의견표명 등에 대한 내용의 공표
 6.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·중재
 7. 시민소통위원회의 제도·정책사항 총괄
-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.

1. 시의회에 관한 사항
2.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
3. 옴부즈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기구 직원의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
4. 옴부즈만의 행위에 관한 사항
5. 판결,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
6. 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
7. 행정심판,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

제8조(직무 관할) 옴부즈만이 제7조의 직무 및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.

1.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
2.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
3. 시의 사무 위탁기관

제9조(해촉) 시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사임을 원했을 경우
2. 신체·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
3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
4.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,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

제10조(책무 및 비밀유지 의무) 옴부즈만은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평하고도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.

제11조(겸직 등의 금지) ① 옴부즈만은 국회의원, 지방의회의원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.
② 옴부즈만은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.

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등

제12조(고충민원의 신청) 시민은 시의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및 해당

업무에 관한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 할 수 있다.

제13조(고충민원의 신청절차)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옴부즈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서면으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.

1.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자의 성명 및 주소(법인 그 밖의 단체에 있어서는 명칭,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)

2. 고충의 신청목적 및 사실이 있었던 일시

3.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

② 고충민원의 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.

제14조(고충민원의 조사 등)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제7조제2항에 해당될 때

2. 고충민원을 신청한 자(이하 “고충민원 신청인”이라 한다)가 고충민원신청 원인이 된 사실과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할 때

3.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때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.

4. 고충민원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그 밖에 조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

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와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조속히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5조(시에의 통보)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또는 스스로의 발의에 따라 채택된 사안(이하 “고충민원 등”이라 한다)을 조사할 경우에는 시의 관련부서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등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인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질문하고 현황을 청취할 수 있으며, 실제조사를 위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6조(고충민원 신청인에의 통지) 옴부즈만은 시에서 통보받은 고충민원의 조사결과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7조(권고 또는 의견표명)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등의 조사결과에 대해 시에 시정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.

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등의 조사결과에 대해 시에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.

제18조(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존중) 시는 제1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존중하여야 한다.

제19조(조치결과 등 요구) ① 옴부즈만은 제17조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한 때에는 시에 대하여 그 조치결과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조치결과를 요구받은 경우에 시는 15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라 서면통보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

제20조(공표) ① 옴부즈만은 제17조에 따른 권고, 의견표명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보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.

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권고, 의견표명 또는 통보내용을 공표함에 있어서는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.

제4장 옴부즈만에 대한 협조·지원

제21조(사무기구) ① 옴부즈만에 관한 사무기구는 「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르며 사무기구에는 옴부즈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.

② 옴부즈만의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조사원을 둘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은

규칙으로 정한다.

제22조(인력 및 예산지원) 시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23조(운영상황의 보고 등) 옴부즈만은 매년 이 조례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시에 통보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장 시민소통위원회

제24조(시민소통위원회의 설치 등) ① 시정 현안사항, 주요정책, 주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항(이하 “정책사항”이라 한다)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권익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민소통위원회(이하 “소통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소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옴부즈만이 주관이 되어 실시를 하며, 관련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구성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
제25조(구성 · 운영) ① 소통위원회는 정책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사안별 · 분야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소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, 간사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정책사항의 중요성,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은 둘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정책사항별 중복성,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옴부즈만 및

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결정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
소통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정책사항의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.

④ 소통위원회의 위원은 정책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인, 분야별 전문
가 등으로 한다.

⑤ 소통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
회를 둘 수 있다.

⑥ 해당 정책사항에 대한 자문이 종료되면 해당 정책사항에 대한
소통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.

제2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